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따라 등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내·외의 교육활동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와 같은 교육적 피해에 대하여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교육재난”의 정의에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발생한 교육적 피해를 추가함 (안 제2조)
-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을 추가함 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내·외의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교육적 피해에 대하여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는 “교육재난”의 정의를 ‘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의 교육적 피해’에서 ‘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의 교육적 피해’로 확대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‘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’을 추가하였음.
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교육적 피해를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학교급식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교육재난 대응과 극복에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